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

의안 번호	465
----------	-----

제의연월일 : 2024. 11. 21.
제 의 자 : 의 장

1. 제의이유

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,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「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심의내용
 -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
 -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
- 구성방법 :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구성

3. 위원현황

구분	인원	위원명단
계	14명	
행정자치위원회	5명	배현주, 류명열, 정준호, 이미애, 허수정
사회산업위원회	4명	정희열, 박은희, 조팔도, 허운옥
도시건설위원회	5명	김주섭, 이철훈, 강영수, 주정영, 김영서

관련 법령

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0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되, 본회의의 의결로 정해진 활동기간 종료시까지 존속한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써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제12조(위원의 선임)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